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(제2차 본회의)
2010. 12. 16.(목) 10 : 00~

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=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=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【목　　차】

1. 거창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	-------	2
2.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-------	5
3.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	-------	9
4.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	-------	13

<의안번호 제2010 - 72>

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0년 12월 16일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0년 11월 17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0년 12월 8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(기획재정부령 제131호, 2010.3.3)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○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(안 제3조).

▪ 객관성·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
▪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

○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 체결하여야 하는 협약과 그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
▪ 협약에는 그 목적과 기간, 업무의 범위, 비용, 처리기한, 책임과 의무, 협약의 해지, 효력발생 등이 포함되도록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「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」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.

○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
▪ 안 제1조(목적)는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한 필요조항이며
▪ 안 제2조(정의)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▪ 안 제3조(사실조사 의뢰)는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

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부합하며

- 안 제4조(협약체결 등)는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 체결하여야 하는 협약과 그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0 - 73>

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0년 11월 16일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0년 11월 17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0년 12월 8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·지위향상·모성보호·보육여건 개선·삶의 질 제고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책무(안 제3조)

○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구성(안 제4조)

○ 위원회의 기능(안 제6조)

○ 여성농업인 지원사업(안 제9조)

-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, 후계인력육성, 여성농업인단체 육성지원
- 영농현장 환경조성,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촉진 등

○ 여성농업인 교육강화(안 제10조)

○ 여성농업인 복지향상(안 제11조)

○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(안 제12조)

○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(안 제13조)

○ 귀농 여성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 조례안은 「여성 농어업인 육성법」 제3조(2010. 3. 17. 전문개정)에 의한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·지위향상·모성보호·보육여건 개선 ·삶의 질 제고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「거창군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. 3. 17. 전문 개정된 「여성 농어업인 육성법」 제3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.

○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(목적)는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하는 필요 조항이며
- 안 제2조(정의)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
- 안 제3조(책무)는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안 제4조(위원회)는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창군 여성 농업인 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4조(위원회)부터 안 제8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까지는 위원회의 구성, 회의 및 기능, 수당과 존속기한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)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9조(여성 농업인 지원사업)는 여성 농업인을 농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를 명시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10조(여성 농업인 교육강화)부터 안 제12조(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)까지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복지향상, 여성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열거한 것으로서 타당하며
- 안 제13조(여성 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)는 여성 농업인의 권익증진, 모성보호,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14조(귀농 여성 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 농업인의 정착지원)는 귀농 여성 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 농업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률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0 - 76호>

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0년 11월 16일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0년 11월 17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0년 12월 8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우리 군의 풍수해 발생현황 및 재난취약지역 등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는 자료 및 현황을 조사하여 사전예방차원의 저감계획수립

○ 계획수립 법적 근거

▪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(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)

나. 주요내용

○ 기초현황 조사

▪ 일반현황 조사: 행정, 자연, 인문, 방재현황 등

▪ 과거 풍수해 발생현황 조사(1999 ~ 2008년)

▪ 풍수해특성 조사(태풍): 호우특성, 강우 및 유출특성 분석
▪ 현장 조사: 693개소(하천 244, 저수지 154, 사방댐 27, 급경사지 81, 읍·면 신청 187)

○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: 58개소
▪ 하천재해: 17개소(후보지 100개소)
▪ 내수재해: 9개소(후보지 23개소)
▪ 사면재해: 28개소(후보지 59개소)
▪ 토사재해: 4개소(후보지 5개소)
▪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과정 및 방법
⇒ 문헌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 분석 및 공학적 검토 수행
⇒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는 우선 선정하고, 재산피해액 1억 원 이상 시 선정

○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
▪ 사업비 산정
⇒ 비구조적 저감대책, 수계 및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별 사업비 산정
▪ 경제성분석을 통한 투자우선순위 결정
⇒ B/C, 재해위험도, 인명피해, 시민불편도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결정
▪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주체별 시행계획 수립
⇒ 사업시행의 용이성을 위해 유형별 및 유지관리 주체별 시행계획 수립

○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

▪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 수행

⇒ 타 분야 계획수립 시 반영 및 기존 부문별 계획의 조정 역할

▪ 방재제도 및 일반 치수·방재분야 활용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동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(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)에 의거 시·도 및 시·군·구 관할 구역 내 풍수해에 노출되거나 잠재 위험요소를 도출, 이를 예방·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정,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자체의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계획안을 수립·제출한 것으로

○ 동 계획안의 공간적 범위는 거창군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가하천 황강 1개소, 지방하천 거창 위천 등 42개소, 소하천 201개소, 사방댐 27개소, 급경사지 81개소, 읍·면 조사 187개소 등 693개소를 포함하며, 대상재해의 범위는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 등인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0 - 78호>

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0년 12월 3일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0년 12월 6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0년 12월 8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거창화강석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『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』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○ **사용·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(안)**

거창의 대표적 향토산업인 화강석을 특화·발전시키기 위한 연구·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개발한 “친환경 기능석재”의 시험생산과 양산체제를 구축하여 각

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 기능석재를 한곳에서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비영리 법인인 (재)거창화강석연구센터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여 경쟁력을 확보코자함

○ **사용·수익허가 재산목록 : 붙임 1**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 동의안은 거창화강석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「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」의 안정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면제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)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갱신 동의안으로서, (당초 군의회 동의 : 2008. 3. 5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: 2008.3.13～2010.12.31)

○ 먼저 관련법을 살펴보면,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 및 제28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 요건과 대부료 요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**지방의회의 동의**가 있는 때에는 감면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시행령

제17조 제4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“당해 시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”로 규정하고 있음.

○ 따라서, 본 건의 경우 화강석의 가공생산은 거창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생산으로 보아지고 이를 가공 생산하는 「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」을 운영하는 (재)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공유재산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붙임 1

□ 사용·수익허가 재산목록

❍ 건　　물 :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, 392㎡

세부시설명 / 면 적(㎡)	공 장	사무실	기계실 및 암석물성 시험실	화장실
392	302	26.4	56.1	7.5

❍ 기계설비

설 비 명		용 도	규 격	수 량	비고
주 설 비	거 치 대	석재 투입장치	1,120㎜×2,000㎜×800㎜	1대	
	세 척 대 (Water shower)	석재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고압의 물로 세척하는 장치	1,120㎜×2,000㎜×2,000㎜	1대	
	공기분사대 (Air blowing)	세척이 끝난 석재 표면의 물을 고압의 공기로 제거하는 장치	1,120㎜×2,000㎜×2,000㎜	1대	
	건 조 대 (Dryer)	석재에 열을 가하여 석재표면을 가열하는 장치	1,120㎜×2,000㎜×2,000㎜	1대	
	광촉매코팅기 (Photo-catalyst coater)	석재에 광촉매 용액을 코팅하는 장치	1,120㎜×2,000㎜×2,000㎜	1대	
	열처리대 (Heat treatment)	코팅이 끝난 석재에 열을 가하여 광촉매 코팅층의 경도를 증진시키는 장치	1,120㎜×2,000㎜×2,000㎜	1대	
	적 재 대	코팅된 석재를 반출하는 장치	1,120㎜×2,000㎜×800㎜	1대	
정 수 설 비	고압펌프	세척에 사용되는 고압의 세척수를 공급하는 장치	380V,1.2Kw S.P : 7kgf/㎠ C : 24,400kg/h	1대	
	정수설비	고압펌프를 통하여 제공되는 세척수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	마이크로필터:<25㎛ 압력조정기:7kgf/㎠	1대	

설 비 명		용 도	규 격	수량	비고
공압설비	공기압축기 (Screw compressor)	주설비에 사용되는 고압의 공기를 제조하는 장치	AC 380V,22Kw FAD : 3.13㎥/min W.P : 9.0kgf/㎠	1대	
	냉동식 건조기	공기압축시 발생하는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	F.C : 3.85N㎥/min W.P : 9.0kgf/㎠	1대	
	흡착식 건조기	고압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	F.C : 3.65N㎥/min D.P : -25㎛ 이하	1대	
	에어탱크 (Air tank)	압축된 공기를 저장하는 장치	M.P : 9.9kgf/㎠G W.P : 9.0kgf/㎠G	1대	
집진및탈취설비	집 진 기	공정 중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	820㎜×820㎜×1,780㎜	1대	
	광반응식 스크러버 (탈취설비)	광촉매 코팅용액 성분중 알콜성분을 분해하는 장치	1,700㎜×400㎜×1,400㎜	1대	
위생시설	변 기		양변기 소변기	2개소 1개소	
	세 면 대		세면대	1개소	
	정 화 조		1㎥/1일	1식	